機船權現網漁業에 대한 考察

朱 尤 一*

Ⅰ. 머리말
Ⅱ. 生產
Ⅲ. 漁船 및 漁法
Ⅳ. 賃金과 魚價
Ⅴ. 漁業經營分析
1. 資本狀況
2. 收支狀況

Ⅰ. 머리말

機船權現網漁業은 水產業法上 水產廳長 許可漁業의 하나로 第1種 船引網漁業에 속하며,「動力船에 依하여 引網(低引網을 除外한다)을 使用하여 採捕하는 漁業」으로 定義되어 있다. 이 漁業은 沿岸漁業中 가장 規模가 큰 漁業으로 우리나라 沿岸에서 가장 漁獲이 많은 魚種의 하나인 멸치를 主對象으로 操業하고 있다.

權現網漁業은 1884年 日本人 坪川甚三郎이 韓國海域에서 試驗한 것이 처음으로, 그의 소개로 1889年 日本의 權現網漁船 7統이 通漁하기 始作했다.[1] 당초에는 無動力船과 小型漁具에 의한 非能率的인 操業에다가 採捕된 멸치도 太陽熱을 利用하여 煮乾品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차차 漁船의 大型動力化와 漁具의 改良 및 大規模化 뿐만 아니라 煮熟乾操方法에도 많은 發展을 보았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灣內에서만 操業하던 것이 차차 急潮流와 外海에서도 操業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리고 操業區域의 擴張에 따라 航海裝備도 充實化되어 가고 있다.

Ⅱ. 生 產

機船權現網漁業의 최근 16年間 漁獲量 變動趨勢를 보면 1964年 9千M/T의 最小値를 보인 일이 있고, 1975年에는 97千M/T으로 最大値를 보여 10倍정도의 振幅을 나타내고 있다〈圖1〉. 이는 主對象 魚種인 멸치 같은 壽命이 짧은 浮魚類에

圖1 年度別 機船權現網 漁獲量 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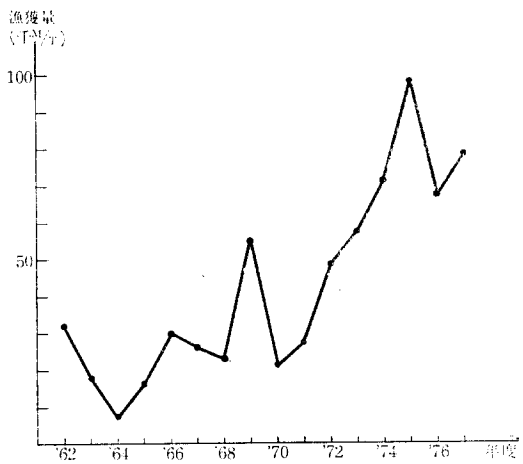

* 韓國農村經濟硏究院 責任硏究院, 水產開發硏究室.

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최근 漁獲量이 약간 減少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漁獲量은 增加趨勢를 견지하고 있다.

1977年의 漁獲量은 79千M/T으로 비교적 높은 漁獲量을 시현하였다. 이와 같은 漁獲量은 1977年 우리나라 總漁獲量 2,421千M/T의 3.3%이고, 全沿岸漁業 812千M/T에 대한 比率로는 9.8%로 沿岸漁業中에서는 구성율이 매우 높은 漁業의 하나라 하겠다.

機船權現網 漁獲量中에는 멸치가 98% 以上 잡히고, 나머지는 전어, 칼치, 정어리 등이 약간씩 混獲되고 있다. 1977年의 경우 멸치가 98.9%나 되었고, 其他魚種으로 최근 大量漁獲되기 시작한 쥐치가 混獲對象魚種에 끼어든 것이 특색이었다.

멸치漁獲量中, 機船權現網에 의한 것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權現網 이외에도 流刺網, 定置網에서도 大量으로 멸치를 漁獲하고 있다. 1977年 멸치 總漁獲量 140,842M/T에서 機船權現網이 78,467M/T으로 55.7%, 流刺網이 34,565M/T으로 24.5%, 定置網이 8,304M/T으로 5.9%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3개 漁業種類에 의한 漁獲이 멸치總生產量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沿岸에서 멸치는 周年漁獲되고 있으나 겨울철은 극히 저조하고 주로 5~11月 사이에 大量漁獲되며, 특히 8月에 피크를 이룬다. 이에 따라 機船權現網도 여름철에 盛漁期를 맞이하고 있다. 즉 機船權現網은 漁獲量統計로 보아서는 周年操業實績이 있으나, 아무래도 禁漁期가 解除된 후인 7月부터 12月까지의 漁獲量이 현저하게 많다. 1970~77年間의 平均月別 機船權現網 資料로 볼 때, 下半期의 漁獲量은 年平均 總漁獲量 59千M/T의 87.1%나 되고, 특히 主漁期인 7~9月 3個月間의 漁獲量이 年漁獲量의 49.7%나 차지하고 있다.

멸치는 漁獲되어 鮮魚로 소비되는 量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마른(乾)멸치의 煮乾品으로 加工流通되고, 다음이 멸치젓으로 만드는 鹽藏品으로, 이 두 形態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멸치통조림과 魚油粉으로도 小量이나마 加工되었으나 최근에는 實績이 없다.

멸치는 이 밖에도 活魚狀態로 漁獲되어 가다랭이 채낚기漁船의 生餌料로 사용될 수 있다. 과거 太平洋에 出漁中인 우리 나라 가다랭이 채낚기遠洋漁船의 生餌料로 쓰기 위한 試驗이 시도되었으나 원거리 漁場까지의 수송이 어려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Ⅲ. 漁船 및 漁法

機船權現網漁業은 기본적으로는 本船 2隻과 魚探船, 轉馬船, 運搬船, 加工船 各 1隻씩 計 6隻이 船團(統)을 이루어 漁撈長의 指揮下에 60名 이상의 船員이 乘船하여 멸치를 漁獲하고 이를 乾멸치로 加工하는 一括操業을 영위하고 있다. 1977年末現在 許可統數는 148統으로 1975年의 190統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表 1〉.

한편 漁船隻數로 보면 1977年 791隻으로 1960

表1 機船權現網漁船勢力

年度	許可統數	漁船隻數			漁船總屯數	統當隻數	統當屯數
		總隻數	動力船	無動力船			
1968	153	1,110	391	719	8,880	7.3	58.0
1969	163	1,151	472	679	9,444	7.1	57.9
1970	163	932	582	350	18,507	5.7	113.5
1971	112	754	330	424	8,564	6.7	76.5
1972	106	968	441	527	9,881	9.1	93.2
1973	143	827	480	347	12,898	5.8	90.2
1974	187	743	477	266	10,968	4.0	58.7
1975	190	832	535	297	10,694	4.4	56.3
1976	147	622	571	51	13,725	4.2	93.4
1977	148	791	732	59	14,747	5.3	99.6

資料 : 水產廳, 「水產統計年報」, 1978.

年代末의 1,100隻 수준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몇년간 비교적 안정된 漁船勢力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他漁業에서와 마찬가지로 機船權現網漁船도 動力船의 增加와 無動力船의 減少가 진행됨으로써, 1977年 動力船이 732隻으로 總隻數의 92.5%란 沿岸漁業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漁船動力化率을 나타내었다.

1977年 統當 隻數는 5.3隻, 隻當漁船屯數는 18.6㎏이며 統當屯數는 99.6㎏로 최근에들어 統當漁船屯數는 大型化되어 가고 있다.

한편 船齡別로 보면 근년 新造船의 投入이 增加되어 가고는 있지만 1977年度에도 상당수의 古船이 尙存하고 있다. 즉 6~10年 船齡의 漁船構成比가 36.0%로 가장 높고, 11~15年이 21.5%, 5年 미만이 20.1%, 21年 이상의 古齡漁船이 아직도 11.8%나 차지하고 있다.

1977年의 統當平均 從事者數는 67名이고, 統當隻數는 5隻이며, 船齡은 6年으로 나와 있다〈表2〉. 이를 累年資料와 비교해 볼 때 船齡의 低下는 認定되나, 從事者數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물론 標本調査資料이므로 어느 정도 實像과 差는 있겠지만, 新造船의 追加投入으로 인한 低齡化는 達成되었을지언정 從事者數를 減少시키는 省力化에는 기여치 못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表2 機船權現網 統當 操業狀況

年度	從漁者數	隻數	船齡	漁獲量	漁獲金額	從事者當漁獲量	魚價
	(名)			(M/T)	(百萬원)	(M/T)	(원/kg)
1970	63	5	10	32.2	14.29	0.51	444
1971	63	5	10	29.0	8.09	0.46	279
1972	62	5	12	30.7	7.21	0.50	235
1973	61	5	13	91.8	25.14	1.51	274
1974	62	5	14	94.0	24.53	1.52	261
1975	86	4	10	87.0	28.86	1.01	332
1976	65	5	6	140.6	71.05	2.16	505
1977	67	5	6	121.0	80.33	1.81	664

資料 : 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査報告」, 1978.

年間 統當漁獲量은 1977年 121M/T으로 나와 있는데, 이 漁獲量은 乾멸치 重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77年 漁獲量 121M/T은 1976年 141M/T보다는 줄었으나 과거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었다.

統當漁獲金額은 每年 增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漁獲量增加보다는 대체로 魚價上昇에 의한 結果이다. 1977年 漁獲金額은 80.3百萬원이었다. 사실 kg當 魚價는 최근에 들어 급격히 上昇하여 1977年에는 664원이나 되었다.

從事者 1人當 年間漁獲量은 1977年 1.8M/T으로 前年의 2.1M/T보다는 못하나 비교적 好漁를 보였다.

이러한 機船權現網의 操業漁場은 南海岸 全域이나 忠武를 중심으로 한 慶南沿岸이 主漁場 이 되고 있다.

水産資源管理와 漁業秩序維持를 위한 現行의 水産資源保護令(大統領令 8185號, 1976.7.9) 上에는 機船權現網漁業에 대한 規制事項이 몇 條項 포함되어 있다. 즉, 4條에서는 釜山市, 慶南, 全南 一部海岸에 대한 禁漁區 設定, 第7條에서는 慶南海域 一部에서의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의 操業禁止를 規定하고 있고, 또한 第6條에서는 網目內徑이 15㎜ 以下의 漁網使用制限, 第17條에서는 許可制限數 總 200件 等, 禁漁區, 禁漁期, 網目制限, 操業統數制限의 漁業規制를 하고 있다.

Ⅳ. 賃金과 魚價

機船權現網漁業의 賃金支拂方法은 他漁業과 달리 원칙적으로 固定給制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이나마 步合制(짓가림制)도 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機船權現

網漁業은 經營規模가 큰 業種이므로 비교적 支出에서의 賃金構成比는 他漁業보다는 낮다.

水產廳 資料[2]에 따르면 機船權現網漁業은 1977年 船員平均 534千원의 賃金을 支拂했는데, 고용기간이 9個月이므로 月平均賃金은 59.3千원으로 全漁業月平均賃金 77.7千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機船權現網의 月平均賃金 59.3千원도 漁撈長의 419.8千원 등의 高賃金을 포함한 平均値이며 一般船員의 月平均 賃金은 52.5千원에 불과하였다.

멸치價格에 대한 資料는 水產統計年報(農水產部)[3], 物價總覽(韓銀)[4], 物價總鑑(大韓商議)[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水產統計年報의 委託販賣高資料는 生멸치 魚價이므로 他資料와의 비교를 위해 乾멸치價格으로 換算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멸치의 煮乾品 收率 25~28%의 平均値 26.5%를 利用하였다.[6] 단 生멸치를 乾멸치로 만드는데는 煮熟乾燥에 따른 加工費가 추가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表 3〉. 參考로 加工에 따른 費用은 1975年 機船權現網漁業에서 營業外費用까지를 포함한 總原價의 8.04%이었다.[7]

韓銀과 大韓商議 資料는 다 같이 乾멸치 都賣價格이다. 그런데 韓銀의 魚價가 大韓商議 魚價보다 훨씬 낮게 나와 있으나, 水產廳의 委販價보다는 높아 加工費 및 委販에서 都賣段階까지의 中間마진이 포함되었음을 나타낸다.

水協中央會의 漁業經營調査報告[8]資料中 漁獲量과 漁獲金額에서 計算된 멸치魚價는 위의 資料와 비교할 때 乾멸치 委販價格에 해당한다. 이 資料는 水產廳의 加工費가 포함되지 않은 收率換算 委販價보다는 높고 韓銀의 都賣價보다는 낮아 다음의 經營分析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表3 年別 平均 乾멸치 換算魚價

單位 : 원/kg

年 度	委託販賣價格		都賣價格	
	水產廳[1] 收率換算價	水協[2] 經營資料	韓銀[3]	大韓商議[4]
1968	77	—	—	181
1969	66	115	—	218
1970	77	444	193	205
1971	142	279	255	326
1972	155	235	226	332
1973	258	274	267	455
1974	373	261	306	541
1975	300	332	443	792
1976	417	505	641	1,128
1977	520	664	811	1,344

1) 水產廳, 「水產統計年報」, 1978.
2) 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査報告」, 1978.
3) 韓國銀行, 「物價總覽」, 1977.
4) 大韓商工會議所, 「物價總鑑」, 1978.

V. 漁業經營分析

아래의 農業經營分析은 주로 水協中央會의 資料[8]中 機船權現網漁業의 1977年까지 年別 統當平均調査値를 중심으로 分析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 提示한 水產廳의 統當漁獲量 및 他機關의 멸치 魚價와는 差가 있음을 認定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資本狀況

機船權現網은 投下資本規模가 沿岸漁業中 가장 큰 漁業이다.

投下資本에 대한 資料는 水產廳[9]에서 1974年 値까지 集計하였는데 1974年의 경우 總投下資本은 23.6百萬원으로 이 중 固定資本이 95.1%인 22.4百萬원이고 流動資本은 4.9%인 1.2百萬원에 지나지 않았다. 資本規模가 상당히 큰 近海漁業까지를 포함한 당시의 沿近海漁業 總平均 投下資本이 25.4百萬원이고, 이 중 固定資本의 구성비가 86.1%인 사실을 감안할 때, 機船權現網의 固定資本 구성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1974年의 總資本에 대한 銀行, 水協 및 個人의 總負債率은 沿近海漁業 總平均이 17.4%인데, 機船權現網은 21.5%인 5.1百萬원이었다. 이는 機船權現網의 他人資本依存度가 비교적 높은 것을 나타낸 바, 沿岸漁業이면서 投下資本規模가 너무 크기 때문인듯 하다.

최근(1977年)의 投下資本을 알기 위해 非公式統計이기는 하나 機船權現網水協[10]資料를 살펴보았다.

總投下資本은 150百萬원이고, 이 가운데 固定資本이 139.5百萬원으로 93.0%, 流動資本은 10.5百萬원으로 7.0%이다. 이는 1974年의 水協資料에 비해 投下資本이 3年間에 6倍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固定資本 구성비는 약간 낮아졌음을 보인다.

이와 같이 總投下資本中 固定資本의 구성비가 流動資本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비록 그 經營體가 收益을 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財務流動性의 면에서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소위 黑字倒產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비단 權現網漁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全體漁業에서 나타나는 共通現象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收支狀況

가. 收支의 槪況

〈表 4〉는 水協中央會資料[8] 中機船權現網漁業의 統當 收支狀況을 요약한 表이다. 이에 따르면 매년 統當 漁業收入과 漁業支出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漁業收入이란 漁獲金額을 나타내는데 이는 漁獲量增加와 魚價上昇에 의해 최근 크게 增大되고 있다. 또한 漁業支出은 人件費, 物的經費, 其他費用의 增大는 물론 漁船의 動力化와 統當屯數의 增大에 따라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漁業收入의 增大가 漁業支出의 增大幅보다 컸던 결과로 漁業收入에서 漁業支出을 減한 漁業利益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77年의 경우 機船權現網漁業의 統當 漁業支出은 59.1百萬원으로 이 중에서는 物的經費가 40.9%에 해당되는 24.2百萬원, 人件費가 38.4%인 22.7百萬원, 其他經費가 10.0%인 5.9百萬원을 차지하고 있다. 人件費로는 賃金, 食費, 厚生費로 나눌 수 있으나 賃金이 전체의 75.2%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物的經費로 분류된 것 가운데는 燃料費, 漁船費, 漁具費 및 材料費 등이 포함되나 燃料費가

表 4 機船權現網 統當 收支狀況

單位 : 千원

年度	漁業收入	人件費				物的經費					其他經費			減價償却費	漁業支出總計	漁業所得	漁業利益
		賃金	食費	厚生費	小計	燃料費	漁船費	漁具費	材料費	小計	賦課手數料및諸費用	其他諸負擔金	小計				
1970	14,287	4,188	1,028	162	5,378	2,809	581	380	150	3,921	606	210	816	521	10,635	4,173	3,652
1971	8,089	2,252	507	56	2,814	1,261	288	188	78	1,815	340	93	432	261	5,323	3,027	2,766
1972	7,214	2,062	505	79	2,647	1,444	276	202	77	1,999	303	83	386	270	5,301	2,183	1,913
1973	25,135	8,221	1,831	213	10,265	4,890	1,277	1,024	558	7,749	1,254	292	1,546	655	20,215	5,575	4,920
1974	24,531	8,262	1,606	172	10,040	6,251	1,289	966	947	9,452	1,202	326	1,528	544	21,565	3,511	2,967
1975	28,855	10,382	2,534	220	13,136	6,411	2,247	1,790	485	10,933	1,434	227	1,661	274	26,004	3,125	2,851
1976	71,049	11,769	7,931	1,455	21,155	13,657	3,345	2,804	2,036	21,841	3,937	1,262	5,199	3,940	52,135	22,853	18,914
1977	80,327	17,050	5,620	—	22,670	14,062	4,105	2,965	3,021	24,153	4,065	1,830	5,895	6,384	59,101	27,609	21,225

資料 : 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査報告」, 1978.

58.2%인 14.1百萬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表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單一項目의 減價償却費로 計上된 것으로 보아 漁船에 대한 減價償却費 및 漁具減價償却費는 물론 육지에서 멸치를 말리기 위한 陸上乾燥施設의 減價償却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統當平均船齡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 古齡漁船이 많아 漁船減價償却費의 計上對象이 되지 않는 漁船이 많을 것으로 보아, 減價償却費의 大宗은 漁具의 減價償却費가 될 것이다.

나. 損益分岐點의 應用

利益計劃을 樹立하거나 利益統制를 實施하는데 있어서 有効한 手段이 되고 있는 損益分岐點의 機船權現網漁業에의 適用을 살펴보자.

損益分岐點分析이란 기본적으로 賣出額(또는 生産量)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固定費, 變動費의 수준과 利益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技法으로 賣出額의 增減變化가 그 經營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情報를 알리는 동시에 利益計劃, 原價統制(여기서는 漁獲物原價), 財務統制에 있어 經營者에게 도움을 준다.

먼저 各年度의 損益分岐點 水準을 알기 위해서는 總漁業費用을 固定費와 變動費로 分類해야 한다. 따라서 水産廳과 水協中央會에서 調査한 費目과 〈表5〉에서 보이는 固定費·變動費의 分類基準에 입각하여 統當 固定費와 變動費를 계산한 것이 〈表6〉이다. 이것을 基礎로 하여 損益分岐點=固定費×$\frac{\text{漁獲金額}}{\text{漁獲金額}-\text{變動費}}$의 公式에 따라 每年의 損益分岐點을 나타낸 것이 〈表7〉이다. 表에 의하면 損益分岐點을 金額面에서 살펴보면 1971年부터는 계속 그 水準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幅도 최근의 몇년간은 매우 크다. 한편 損益分岐點의 漁獲量 水準도 1971年부터 증가되고 있으나 최근 몇년간의 增加幅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1977年의 경우는 漁獲量에서의 損益分岐點은 前年에 비하여 다소 떨어졌으나 金額面에서의 損益分岐點水準은 오히려 前年에 비하여 上昇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變動費率의 上昇과 상대적으로 固定比率의 下落에 그 主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어떤 漁業이나 産業을 經營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固定費와 가장 적은 變動費率로서 그의 經營을 營爲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收益의 擴大効果

表5 固定費와 變動費의 分類基準表

費用項目	固定費	變動費
人件費	1/4	3/4
燃料費	—	全額
漁船費	1/3	2/3
漁具費	—	全額
材料費	1/5	4/5
販賣手數料 및 諸費用	—	全額
其他諸負擔金	1/2	1/2
減價償却費	全額	—

資料：水産廳,「漁業經營調査報告」, 1975.

表6 統當固定費와 變動費

年度	支出總計(百萬원)	固定費(百萬원)	變動費(百萬원)	變動費比率(%)
1970	10.63	2.19	8.44	79.4
1971	5.32	1.12	4.20	78.9
1972	5.30	1.08	4.22	79.6
1973	20.21	3.90	16.31	80.7
1974	21.56	3.84	17.73	82.2
1975	26.00	4.52	21.49	82.6
1976	52.13	11.38	40.75	87.2
1977	59.10	14.94	44.16	74.7

表7 損益分岐點과 附加價値額

年度	損益分岐點		附加價値額(百萬원)
	金額(百萬원)	漁獲量(%)	
1970	5.35	12.1	8.97
1971	2.34	8.4	5.62
1972	2.60	11.1	4.55
1973	11.12	40.6	15.05
1974	13.85	53.1	12.98
1975	17.71	53.4	14.94
1976	26.75	52.9	38.56
1977	33.16	50.0	48.72

表8 **收益性 指標**

區分 / 年度	機船權現網漁業			꽁치流網漁業			近海鮟鱇網漁業		
	漁業收益利益率	收支比率	1人當年間利益額	漁業收益利益率	收支比率	1人當年間利益額	漁業收益利益率	收支比率	1人當年間利益額
	%	%	千원	%	%	千원	%	%	千원
1970	25.6	77.4	58.0	34.0	66.0	24.4	25.0	75.0	156.0
71	34.2	65.8	43.9	22.9	77.1	58.9	27.4	72.6	224.0
72	26.5	73.5	30.9	35.8	64.2	50.0	26.6	73.4	229.7
73	19.6	80.4	80.7	36.1	63.9	240.5	30.1	69.9	462.3
74	12.1	87.9	47.9	37.9	62.1	379.4	23.2	76.8	502.1
75	9.9	90.1	33.2	19.1	80.9	128.4	28.2	71.8	741.0
76	26.6	73.4	291.0	28.4	71.6	967.8	24.9	75.1	741.9
77	26.4	73.6	316.8	10.3	89.7	175.7	32.5	67.5	1,338.8

* 漁業收入利益率 $= \frac{\text{漁業利益}}{\text{漁業收入}}$　　收支比率 $= \frac{\text{漁業支出}}{\text{漁業收入}}$　　1人當 年間利益額 $= \frac{\text{漁業利益}}{\text{從事者數}}$

資料：水協中央會,「漁業經營調査報告」, 1978.

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漁船, 漁具 등의 固定設備의 경쟁적인 擴充으로 漁獲象對資源의 減少를 가져와 모두에게 다 같이 損失을 초래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다. 收益性

機船權現網漁業의 年度別 漁業收益利益率, 收支比率, 1人當 年間利益額은 〈表 8 〉에 나타나 있다. 漁業收益利益率이란 漁業經營活動의 成果를 總括的으로 파악하는 比率이며, 他經營體, 業種, 產業과 比較分析함으로써 經營合理化를 위한 問題點을 발견할 수 있으며, 經營活動의 能率을 測定할 수 있는 比率이기도 하다. 한편 收支比率은 漁業收入에 대한 漁業支出의 比率을 나타내며 이 比率이 낮을수록 收益面에서 유리한 상태를 보인다. 즉 漁業收益利益率과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人當 年間收益額은 從事者 1人當 年平均利益額을 지칭한다.

위에서 든 收益性을 나타내는 몇개의 指標를 꽁치流網漁業과 近海鮟鱇網漁業과 비교해 보았다. 여러 漁業種類 중에서 이 두 漁業을 선택한 이유는 各漁業의 主對象魚種은 각기 다를지라도 機船權現網漁業이 우리나라 南海岸沿岸漁業의 代表漁業인 것처럼 鮟鱇網은 西海岸, 그리고 꽁치流網漁業은 東海岸의 代表的인 沿岸漁業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表 8 〉에 의하여 볼 때 꽁치流網漁業과 近海鮟鱇網漁業에 비하여 機船權現網漁業의 경우는 漁業收益利益率, 1人當 年間利益額 모두가 비교적 작다(꽁치流網漁業은 다소 기복이 있음). 그러나 機船權現網漁業의 이러한 收益性은 비교된 漁業보다 다소 낮은 감이 있다는 것이지 비관적인 水準은 아니다.

꽁치流網漁業과 近海鮟鱇網漁業이 資本規模가 작으면서도 機船權現網漁業보다 더욱 良好한 收益性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複合的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즉 資源量, 魚價, 勞動生產性, 操業日數 등의 많은 原因에 의하여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註1. 韓國經濟開發硏究所,「韓國水產業의 現況」, 1966.
2. 水產廳,「沿近海漁船員 賃金實態」, 1978.
3. 農水產部,「水產統計年報」, 1978.
4. 韓國銀行,「物價總覽」, 1977.
5. 大韓商工會議所,「物價總鑑」, 1978.
6. 水產廳,「水產製造業 業務便覽」, 1978.
7. 韓國水產經營學會,「水產物 生產原價調査報告書」, 1976.
8.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漁業經營調査報告」, 1978.
9. 水產廳,「漁業經營調査報告」, 1975.
10. 機船權現網水產業協同組合,「漁業實態把握」, 1978.